#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8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 강병원·안민석·기동민

김윤덕 · 김경협 · 한병도

황 희 • 이개호 • 강선우

진성준 • 이광재 • 인재근

조승래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시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9조의2(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6
	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u>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
	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
	려할 수 있다.